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203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송의 범위, 수송관의 범위 및 저장소 기준(안 제2조 내지 제4조)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에 따른 수송,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저장소의 용어 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이산화탄소 스트림 외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범위, 수송의 수단, 배관 및 관계 시설의 범위, 저장소의 기준을 규정함

나.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탄소중립위원회의에 상정함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안 제8조)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치·운영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포집시설의 위치 및 면적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함

라.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안 제10조)

수송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수단별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수송관설치운영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검사 실시(안 제11조 내지 제14조)

- 1)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 점검과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함
- 2)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별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자의 여행·질병, 해임·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부재 시 직무대행자 및 직무대행기간을 규정함

바. 탐사승인의 절차 및 취소절차 등(안 제16조 내지 제19조)

- 1)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탐사승인신청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2) 탐사승인 기준으로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능력, 탐사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
- 3) 탐사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탐사기간 종료일(연장받은 자는 연장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승인의 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탐사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탐사승인서를 반납해야 함

사.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선정 취소(안 제20조 및 제22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저장후보지 선정 시 안정적 주입·저장이 가능한 지질학적 물성 및 구조의 해당 여부, 누출 등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함
- 2) 저장후보지 선정 취소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등을 관보 등에 공표해야 함

아. 저장소의 폐쇄절차(안 제24조)

- 1) 저장소의 폐쇄명령 시 저장사업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2)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시추공의 완

결(完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장소의 폐쇄 방법에 적합하게 폐쇄를 실시해야 함

자. 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안 제25조)

- 1) 원상복구의 기준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및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의 수거로 규정함
- 2) 폐쇄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완료 시 원상복구 완료 확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차. 저장사업의 허가 및 저장소의 사용신고(안 제26조 및 제28조)

- 1)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저장사업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2)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저장소의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카. 저장사업의 승계신고, 개시 신고 및 휴·폐업 허가신청(안 제29조 내지 제31조)

- 1)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2) 저장사업자는 사업개실일부터 30일 이내에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3)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폐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

를 신청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함

타. 모니터링계획 승인 절차(안 제33조)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등이 포함된 20년 이상의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해당 연고의 모니터링계획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함

파. 저장소의 운영 등(안 제36조 내지 제38조)

- 1)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량과 최종저장된 이산화탄소량이 상이한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누출 통보를 해야 하며,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2)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예방 등 저장소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함

하.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 절차(안 제39조 내지 제44조)

- 1) 시·도지사는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의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지정 해제 시 집적화단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해제사실을 알리고 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해제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안 제45조 내지 제49조)

-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연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또는 그 제품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이 상용화가 가능가능하며, 성능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경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평가기관의 평가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증을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함
- 3) 인증의 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심의위원회의의 구성·운영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4) 인증 취소에 대한 예고통보 및 소명자료 제출 등 인증 취소 처분 전 사업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함

너.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안 제49조 내지 제52조)

- 1)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 및 산정방법 등을 규정함
- 2) 전문기업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

해야 하며,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함

- 3)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

더. 보조·용자의 절차 등(안 제56조)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관련 사업자는 포집등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포집 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음

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60조 및 제6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집등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의 설립 등(안 제63조 및 제64조)

진흥센터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진흥센터로 설립하고, 진흥센터가 필요한 경우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국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등으로 규정함

버.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안 제65조 내지 제67조)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증, 최종 저장량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을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괄호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이산화탄소 스트림 외에 기체(혼합기체를 포함한다), 액체 또는 고체의 상태(초임계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산업·발전시설 및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격리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이하 “수송관”이라 한다)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수단

제3조(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포함한다. 다만, 선박 안 배관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배관에 설치·사용되는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이산화탄소 허브 터미널
4. 이산화탄소 임시저장설비(육상 지중 저장에 한한다)
5. 해상플랫폼(해양 지중 저장에 한한다)
6. 불순물 분리 정제 설비
7. 이산화탄소 주입설비
8. 이산화탄소 수송 관련 압축·냉각시설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시설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충분한 저장용량을 갖출 것
 2. 지질의 특성상 안정적인 주입 및 저장이 가능할 것
 3.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4.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 크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소관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의 “포집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2. 포집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3.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방안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이산화탄소 포집·수송 시설 등의 설치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설치계획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공사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및 안전대책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조달계획
4.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5.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계획
6.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처리·저장·활용계획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

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용량 및 포집방식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집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사전 검토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영비용의 일부 지원
4. 그 밖에 포집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송수단별 시설 확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1. 수송관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 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수송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운반선, 임시저장 및 적하역 설비,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차량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철도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에 고정된 탱크, 긴

급차단장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송사업의 승인
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
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
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최초의 점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2. 정기 점검: 제1호에 따른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안전관
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해당 수송관설치운영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수송관의 안전유지
2. 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4. 그 밖의 위험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가 아닌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3.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수송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최초 정기검사를 신청한 자는 제외한다)

2. 수시검사명령서(수시검사명령을 받고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해

야 한다.

③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안전검사증 사본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4장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탐사·선정·폐쇄 등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기술인력, 자금조달 계획 등 사업수행 능력에 관한 서류
2. 탐사 구역이 타인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관리인·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동의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탐사를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탐사승인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탐사승인 기준을 검토하여 저장소의 탐사승인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저장소의 저장용량 및 안정성 평가가 가능한 해상도와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탐사방법일 것

3. 탐사 구역 내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기준 등 그 밖의 탐사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자는 탐사기간 종료일까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탐사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2.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저장후보지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저장후보지 발굴에 성공하였으나, 개발 단계 진입 또는 사업성 확인을 위해 추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탐사승인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탐사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제16조제4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 위치
2.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안정적으로 주입 및 저장할 수 있는 지질학적 물성 및 구조에 해당할 것
2. 누출 등 잠재적 위험성에 따른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3. 누출 등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저감 방안이 적절할 것
4. 누출 등 잠재적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계획이 적절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저장후보지의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저장후보지의 공표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저장후보지의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총저장용량
3.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 위치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저장후보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각각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제22조(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장후보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저장후보지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 선정 취소된 저장후보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저장후보지의 구역을 명시한 육상 또는 해저 구역도
3. 저장후보지의 선정 취소 사유
4. 저장후보지의 선정일 및 선정 취소의 효력발생일

제23조(저장소의 폐쇄사유)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저장소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저장소의 폐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저장소의 폐쇄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폐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폐쇄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폐쇄 명령을 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저장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저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 등을 의견

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저장사업자는 저장소의 봉인(封印), 시추공의 완결(完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장소의 폐쇄 방법에 적합하게 폐쇄를 실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소의 폐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은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및 저장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의 수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저장사업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주입구 폐쇄 방법 및 철거대상 공작물 등 원상복구의 범위 등이 포함된 원상복구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상복구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라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완료한 저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보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폐쇄 개요
2. 폐쇄 후 관리기간
3.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과 그 책임
4. 폐쇄의 방법 및 절차
5. 주요 공정별 일정
6. 폐쇄 후 최종 부지 상태
7. 폐쇄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저장소의 폐쇄를 한 저장사업자에게 폐쇄된 저장소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저장사업의 허가 등

제26조(저장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신청서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

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 전단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사업 범위
2. 저장소 위치
3. 저장소 규모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장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27조(저장사업 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저장사업 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2. 저장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3. 저장사업자의 신용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가 양호할 것
4. 가스기술자, 배관기술자, 이산화탄소 누출 여부 모니터링 기술자 등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5.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저장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심사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저장소의 사용신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소 사용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사업의 승계신고) ①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저장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양수·합병 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사업 허가증
2.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인에게 제26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30조(사업의 개시 신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의 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사업 개시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1조(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저장소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사유서

4. 휴업 또는 폐업 시 저장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저장소가 운영 중인 경우에 한한다)

5. 저장사업 허가증(폐업의 경우에만 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이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2. 사업의 재개(再開) 의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장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저장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모니터링계획 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저장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저장소의 모니터링 방법
2.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누출량
3. 저장소 내의 압력 등 환경 변화
4. 저장여건의 변화와 예측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환경부장관
2. 국토교통부장관
3. 해양수산부장관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모니터링계획을 승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후부터 매년 해당 연도의 모니터링계획 이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금지행위의 예외)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의 고장 또는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2.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
3. 저장 환경의 변화로 저장소 또는 모니터링 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35조(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순물”이란 이산화황, 일산화질소, 황화수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량 이상의 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스트림 내 수분함량이 배관 부식을 일으키지 않을 수준으로 억제되어 있을 것

2. 수송·저장 과정에서 다상유동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되는 이산화탄소의 상태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저장소의 운영 등) ①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장소의 위해 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수립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이행

②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저장소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량과 최종저장된 이산화탄소량이 상이함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누출의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한 조사반의 구성·운영 및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누출통보를 한 저장사업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시 중단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저장소의 일시 운영 중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저장소의 일시 운영 중단의 기간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일시 운영 중단 승인 시부터 제38조에 따른 수시검사의 완료 시 까지를 말한다.

⑧ 저장사업자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저장소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1. 이산화탄소의 주입량 및 최종저장량
2. 주입정 및 관측정의 압력 데이터

제37조(저장소의 정기검사)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저장되어 있을 것
2. 이산화탄소 주입량과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3. 주입정과 관측정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4.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②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최초검사: 저장소의 사업 개시 신고가 최초로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2. 계속검사: 제1호의 최초검사 또는 제3호의 변경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3. 변경검사: 저장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저장소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再開)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사업자는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설치명세서(도면을 포함한다)
2. 저장소 및 관계 시설의 점검·유지 및 보수 명세서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검사의 세부 검사 기준·항목·방법 및 정기검사의 실시 유예 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저장소의 수시검사)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저

장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시검사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를 저장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을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시검사의 세부 검사 기준, 항목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의 지정 및 운영

제39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의 지정목적과 중장기 발전방향
2. 해당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 현황 및 기반시설 현황
3. 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방안
5. 집적화단지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기간
6. 그 밖에 집적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집적화단지육성계획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육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그 지정받으려는 집적화단지와 관련한 사업자,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0조(집적화단지의 지정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적화단지육성계획에 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정신청을 한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목적
3. 집적화단지의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4. 집적화단지가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제41조(집적화단지의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적화단지 내 기업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2. 집적화단지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 활동
3. 집적화단지 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
4. 집적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원사업 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2조(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집적화단지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②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집적

화단지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지정해제를 신청하려는 집적화단지의 명칭 및 위치
2.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 지정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방안
4. 그 밖에 집적화단지 지정해제 신청과 관련한 참고자료

③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위원회에 해당 집적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적화단지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 사유
3. 집적화단지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지정해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43조(집적화단지의 운영성과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집적화단지의 운영성

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계획
2.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3. 집적화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실적
4. 집적화단지가 지역경제 및 환경에 기여한 효과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이행 결과

제44조(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집적화단지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 집적화단지 내 포집·저장·활용 관련 기술의 활용도
4.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집적화단지 내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45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화학원료, 연료 등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 또는 그 제품
2.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2. 성능 및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인증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증의 비용, 유효기간 연장 등 이산화탄소의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표시 등) ① 인증표시는 제46조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49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요건)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이산화탄소 활용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한 제재처분 유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제50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직·설비·전문인력에 관한 명세서
3. 총매출액 및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한 때에는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 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

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 취소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2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45조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 목적·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에 대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2. 이산화탄소 활용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실증시험 및 사업화 지원
3. 집적화단지로의 입주 알선
4.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선정 평가의 우대
5. 이산화탄소 활용 인력 양성 교육 지원
6. 표준화 및 인증 지원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의 국내외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화
8. 그 밖에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포집등 관련 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

정연구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포집등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대학에 대하여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연구인력의 교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실증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에 참여하려는 포집등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증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실증사업에 적용될 포집등 기술에 관한 사항
3. 실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지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실증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5. 실증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물적 피해배상 방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실증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실증사업참여자로 승인할 수 있다.

1. 실증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실증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실증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제56조(보조·융자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관련 사업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포함된 포집등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포집등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포집등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포집등에 관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

는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7조(금융지원) 포집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보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용보증

제58조(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종류와 범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세부 업종별 종류와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9조(포집등 사업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6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집등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포집등 기술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포집등 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 과정 및 내용의 체계성
2.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3. 시설 및 장비 등의 교육 적합성
4. 전문인력의 수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역적 분포 등 교육 수요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의 전문인력양성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제61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포집등 관련 기술 표준화 분야의 전문기관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 등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63조(진흥센터의 설립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이산화

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설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는 것

② 법 제4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포집등과 관련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2. 포집등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 그 밖에 포집등 관련 기관 간 업무 협력 사업

③ 진흥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 내용

2. 보조받은 비용의 사용 내용(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64조(진흥센터의 파견 요청 대상 기관)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대학·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대학·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해당 학교의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장 보칙

제65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공공모니터링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적절성 검증
2. 최종 저장량 검증
3. 주입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 정기·사후 모니터링 자료 검증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7조(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제66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검증 결과

제68조(모니터링 결과의 공개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저장소의 운영 정보

2. 저장소별 최종저장량

3. 저장소별 저장 전·후의 압력 변화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 방법,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저장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탐사권자, 수송관설치운영자, 저장사업자 및 전담기관(이하 “저장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저장사업자 등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1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4.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저장소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32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 검토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센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7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저장소의 탐사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저장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사업 개시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3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 인증에 관한 사무
8. 법 제35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9장 벌칙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 인원(제12조제4항 관련)

안전관리자의 구분	자격 구분	선임 인원
1. 안전관리총괄자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1명
2. 안전관리책임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나. 가스산업기사 이상	1명
3. 안전관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위험물기능사 이상 나. 배관기능사 이상 다. 가스기능사 이상	2명 이상

비고

1.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해당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안전관리원 자격을 가진다.
3. 안전관리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사업정지 기간에 제2호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규모별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업정지 기간은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등급	이산화탄소 저장규모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50만톤 이하	5
2	50만톤 초과 100만톤 이하	8
3	100만톤 초과 300만톤 이하	10
4	300만톤 초과 500만톤 이하	13
5	500만톤 초과	16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포집등에 관한 산업의 종류와 범위(제58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업	이산화탄소 포집업 포집 이산화탄소 처리업
이산화탄소 수송	이산화탄소 수송업	이산화탄소 차량 수송업 이산화탄소 선박 수송업 이산화탄소 철도 수송업 이산화탄소수송관 수송업 이산화탄소 임시 보관업
	이산화탄소 수송 안전관리업	이산화탄소 수송 점검·유지보수업 이산화탄소 수송 안전관리 서비스업
이산화탄소 저장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업	이산화탄소 저장소 지질 조사업 이산화탄소 저장소 탐사업
	이산화탄소 저장소 주입·모 니터링	이산화탄소 주입운영업 이산화탄소 저장소 시설 유지관리업 이산화탄소 저장 모니터링 분석업
이산화탄소 활용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제조 업	무기물질 및 유기물질 제품 제조업
CCUS 건설업	CCUS 건설업 CCUS 특수 건설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건설업 이산화탄소 수송 건설업 이산화탄소 저장 건설업 이산화탄소 저장소 폐쇄업
CCUS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CCUS 관련 소재 제조업	이산화탄소 포집 소재 제조업 이산화탄소 활용 소재 제조업
	CCUS 관련 부품 제조업	CCUS 관련 부품 제조업
	CCUS 장비 제조업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 제조업

		이산화탄소 수송 장비 제조업 이산화탄소 활용 장비 제조업
CCUS 관련 이산화탄소 판매업	CCUS 관련 이산화탄소 판 매업	CCUS 관련 이산화탄소 판매업
CCUS 관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CUS 관련 연구개발업	CCUS 관련 연구개발업
	CCUS 관련 전문 서비스업	CCUS 관련 전문 서비스업
	CCUS 관련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CUS 관련 측정 및 평가업 CCUS 관련 시험, 검사, 분석업 기타 CCUS 관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CUS 산업 협회 및 단체	CCUS 산업 협회 및 단체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며, 이 경우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사업을 개시한 자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2,000	2,500	3,000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다.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술 및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1호	300	400	500
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2호	300	400	500
바.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저장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3호	300	400	500
사.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누출 관련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4호	200	300	400
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4조 제2항제5호	100	150	2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연 락 처	(044) 203 - 5157